

◇개정이유

막대한 예산과 자금이 투입되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,

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·운영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가.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(제35조의3 신설).

나.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정, 지정 변경, 지정해제 절차 등을 정함(제47조 및 제48조 신설).

다.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·서비스를 제공·이용하기 위한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절차, 승인기준, 변경 절차 등을 정함(제49조, 제51조 및 제52조 신설).

라.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기술·서비스를 시험·검증하기 위한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정함(제50조 신설)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19년 11월 26일

국무총리 이낙연

국무위원
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

●법률 제16632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

부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, 교통안전수칙 등을 교육받도록 하고 있으나,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량화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운전업무 시작 전에 받아야 할 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9년 11월 26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언

국 무 위 원
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

●법률 제16633호

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

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중 “개축”을 “개축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제16조제4항”을 “제16조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고 해당 도로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.

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통행료 수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다만, 제4조제4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(유료도로관리권 설정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)과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「유료도로법」 제16조제3항”을 “「유료도로법」 제16조제4항”으로 한다.